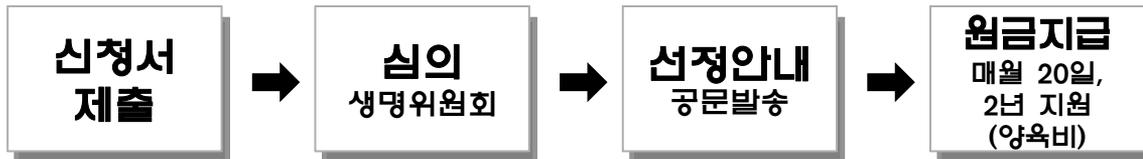


## 2017년 하반기 생명위원회 생명지원사업 신청안내

### 1. 지원절차 및 수령안내



※ 출산지원금, 치료비지원금은 1회 지급

※ 본당(또는 관련 기관)을 통한 지원신청과 본당(또는 관련 기관)을 통한 지원금 전달 원칙

### 2. 지원사업 구비서류 안내

공통서류 : 지원신청서, 생명지원금이 입금 될 본당(또는 시설) 명의 통장사본,  
(수급자인 경우) 수급자 증명서

#### 가. 출산비지원금 구비서류(1회 지급/1가정 당 최대 50만원)

: 셋째 자녀를 임신한 임산부, 세 자녀 이상의 임산부, 미혼모 또는 미혼모사회복지시설

- 1)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- 2) 임산부 수첩 또는 보건소, 의료기관 확인서(임신 증명서류 첨부)
  - ☞ 임신 증명서류 / 출산예정일 기재 부분 복사 첨부

#### 나. 양육비지원금 구비서류(2년 매월지급/1가정 당 10만원)

##### ◎ 한부모가정

: 세대주 부모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세대, 배우자의 사별, 이혼

- 1)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- 2) 한부모가족증명서(주민센터 및 지자체 발급가능)

##### ◎ 실직자가정

: 18세 이하 자녀세대 중 가장의 실직

- 1)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- 2) 실직 및 폐업 확인증명이 가능한 서류
  - 실직 이전 자영업자 :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(세무서 발행)
  - 실직 이전 월급생활자 : 퇴직증명원(전 회사 발행가능, 서류 내 실직사유와 근로기간이 나타나야 함)
  - 일일근로자, 노점상, 영세사업자 : 고용확인서(고용주 발행)

◎ **다자녀가정**

: 현재 세 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3세 이하의 가정(현재 셋째아이 임신부 포함)

1) **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**

※ 셋째아이 임신부는 임신부 수첩(사본/출산예정일 기재되어있는 부분) 또는 보건소, 의료기관 확인서 제출요망

◎ **조손가정**

: 부모의 이혼, 가출 등의 사유로 할아버지, 할머니가 18세 미만의 손자 손녀 양육

1) **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**

◎ **미혼부모가정**

: 미혼자(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제외)

: 미혼모사회복지시설(새싹들의 집, 생명의 집) 퇴소 시 시설과 연계추천을 받은 가정

※ 대상자 선정 및 심사 → 시설 지원금 송금 및 대상자 전달

1) **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**

2) **자녀 출생증명서**

◎ **입양가정**

: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

※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 제외

1) **양부모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**

2) **입양관계증명서**

**다. 희귀난치병지원금 구비서류(1회 지급/개인별 차등지급)**

: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중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아동, 성인

1) **진단서 및 소견서 1통**

2) **진료비 영수증(진단 후 또는 장기치료 환우일 경우 최근 1년간 영수증)**

**3. 신청마감 : 2017년 11월 10일(금)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**

※ 주소 : (우)16346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39,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음화국 생명위원회

**4. 문 의 : 교구 사회복음화국 ☎ 031-268-8523, 내선 0401) / brave@casuwon.or.kr**